



PCT, 出願節次 등 諸規程改正

—5次總會서 各國에 PCT加入促求—

特許協力條約(PCT)同盟은 지난 6月 9日 제네바에서 第5次總會를 열고 PCT 諸規程改正案 및 建議案 등을 採擇하였다.

諸規程改正骨子 및 新規則은 다음과 같다.

微生物特許出願節次, 手數料滯拂, 優先權書類, 特許請求範圍에 대한 修正日字, 指定國特許廳에 대한 國際出願書副本의 送達, 國際豫備審査請求有效日字, 郵便·電報通信 등의 遲延 및 記錄副本의 送達 등에 관한 規定들을 改正하거나 새로 制定하였다.

이번 總會는 파리同盟國으로서 PCT에 加入하지 않은 國家들에 대하여 PCT加入을 促求하는 方案을 講究하도록 建議하는 한편 유럽特許協約(EPC)과 리브르빌協定(아프리카知的所有權機構)의 모든 締約國들은 PCT에 加入하지 않으므로써 빚어지는 不利益을 排除하기 위해서도 早速히 PCT에 加入하는 것이 要請된다는 建議案도 아울러 採擇하였다.

EPO, 부다페스트條約3條 등 受諾

—微生物國際寄託을 認定—

유럽特許廳(EPO)은 1977年 4月 28日 부다페스트에서 成立된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微生物寄託國際承認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 第9條(1)(a)에 의거, 同條約第3條(1)(a)에 規定된 微生物寄託承認과 同條約第3條(2)에 規定된 要件에 관한 承服 및 政府間工業所有權機構에 대한 適用規程들을 受諾한다는 宣言書를 지난 8月 26日字로 提出하였다.

이 宣言書內容은 EPO에 대하여 지난 11月 26日字로 發效하였다.

(WIPO提供)

감비아, WIPO加入書寄託

—12月 10日字로 發效—

감비아政府는 지난 9月 10日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加入書를 寄託하였다.

1967年 7月 14日 스톡홀름에서 調印, 設立된 WIPO는 감비아에 대하여 12月 10日字로 加入發效되었다.

감비아는 WIPO豫算分擔金 클래스 C에 該當된다.
(WIPO提供)

蘇聯商標法 改正施行

—79年과 80年에 잇달아—

蘇聯發明發見國家委員會는 1979年 3月 22日字로 商標法(蘇聯邦의 商標에 관한 命令)을 大幅 改正하여 同年 10月 1日부터 施行하였다.

當初의 商標法은 1962年 5월에 制定하고 1974年 1月 8일에 改正하여 施行하다가 이번에 25個項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의 必要性은

(1) 1976년 10월 19일에 制定된 發明發見國家委員會規程에 商標關係規定이 많이 包含된 點

(2) 商標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協定에 1976년 1월 1일부터 蘇聯이 加盟됨으로써 國際協力上 不可避한 點

(3) 舊法施行過程에서 商標出願登錄實務에 不備, 不明確한 點등이 累積된데 起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후에도 今年들어 다시 4個項을 補充改正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그 內容은 確認되지 않고 있다.

同商標法은 62년의 制定당시에는 全文26條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74년에는 全文36條로 개정되었고 79년의 제정시에는 條文의 變動은 없으나 80년의 제정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放電加工特許의 國際紛爭 —스위스와 日 사이에 熾烈—

國際的인 特許紛爭이 스위스와 日本企業 사이에 벌어졌다.

事件의 줄거리는 스위스의 綜合電機生産企業인 설미會社와 日本의 牧野푸라이스製作所, 소디크, 放電시스템 등 3個企業 사이에 放電加工技術의 搖動式부치기加工法特許의 專用實施權侵害與否問題의 분쟁 사건이다.

提訴者는 설미로서 日 3社가 설미의 專用實施權을 침해했다하여 牧野푸라이스를 10月 27日字로 東京地法에, 소디크와 放電시스템을 28日字로 橫濱地法에 損害賠償請求訴訟을 各各 提起한 것이다.

배상청구는 特許權者인 프랑스의 랑게팡會社와 설미가 合算請求方式을 취하고 있으며 請求金額은 牧野푸라이스에 대하여 25,800萬圓, 소디크에 22,000萬圓이며 소디크의 金額中 5,000萬圓은 提携關係에 있는 放電시스템과 兩社 共同負擔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被訴 3社는 설미가 말하는 特許侵害는 하지 않고 있다는 主張이다.

搖動式부치기 加工裝置를 結合한 放電加工機는 加工速度의 向上 電極原價 및 放電加工原價의 低減에 關聯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牧野푸라이스는 설미로부터 警告狀을 받은 다음 昨年4월에 랑게팡特許의 無效審判을 請求하고 있으며, 소디크는 작년엔 설미本社에 任員을 보내어 交渉한바 있다.

또 牧野푸라이스側은 自社製品에는 搖動式부치기 加工裝置를 결합하지 않았으며 다만 數年前에 搖動式裝置를 購入하여 自社放電加工機에 着設, 數臺를 販賣한적이 있다는 解明이다.

또한 소디크와 同社의 傍系企業인 放電시스템의 兩社도 설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被訴者들의 意見을 綜合하면 放電加工은 基本的으로 數値制御(NC)放電加工機이므로 설미가 主張하

는 蹣跚式부치기 加工裝置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더욱이 랑게팡의 특허내용은 西獨의 나소리어會社가 이미 開發한 것이며 이미 그 특허는 有效期間이 經過한후에 랑게팡으로부터 설미가 특허를 取得하였다 고도 말하고 있다.

다시 이들 주장을 要約하면 同特許는 公知일뿐더러 基本적으로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反面 설미쪽이 展示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2년뒤인 今年の 東京國際工作機械展示會前에 法廷沙汰로 몰고 갔을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3個企業과 實施許諾契約을 締結한 事實들은 提訴者側으로는 빈틈없는 特許戰略을 展開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美마社開發 非習慣性鎮痛劑

—FDA製藥許可, 日에 技術提供—

美존슨系의 마크닐 포머슈티칼會社는 麻藥에 비슷한 鎮痛作用을 하되 習慣性이 없는 非스테로이드性 鎮痛·抗炎症劑를 開發하여 지난 10月 28日字로 美食品醫藥品局(FDA)의 製藥認可를 얻었다.

조메피락으로 불리는 이 藥의 製藥技術은 大日本製藥會社에도 提供하여 日本內에서 생산하기로 合意하였다. 이에 따라 늦어도 83년까지는 日本에 製藥申請을 提出할 豫定인데 現在 日本의 製藥業界에는 진통제로서 아스피린 以外에 安全한 것이 없는 實情이므로 조메피락과의 技術提携에 큰 期待를 걸고 있다.

이 조메피락은 動物實驗結果 100mg이면 아스피린 2錠(1,300mg)의 效能이 있으며 물핀 8mg의 筋肉注射보다도 效果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中樞神經에 作用하지 않고 푸로스테그란진의 合成을 抑制하여 진통을 없애기 때문에 마약과 같은 습관성이 없음을 또한 자랑이 된다는 것이다.

마약만을 使用하는 癮의 진통제로서도 有效할뿐 아니라 頭痛에서 手術後의 진통, 折骨, 慢性류마티스등에 유효하리라는 이 약은 현재 少數患者를 相對로 臨床實驗中이다.

따라서 이 약의 賣藥은 4~5年後가 豫想된다.